

1. 내부통제정책

가. 내부통제체제 구축현황

내용
1. 내부통제 구축현황
A. 개요
"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"(이하 "지배구조법"이라 한다) 제24조 내지 제30조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(계약직 및 임시직 등을 포함한다.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)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건전성을 도모하고,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B. 내부통제조직
1) 내부통제조직의 구성 및 역할 - 회사 내에 내부통제조직으로서 준법감시인, 위험관리위원회, 감사, 컴플라이언스 및 리스크관리팀을 설치하였으며 이를 통해 내부통제업무를 관장할 것임
2) 이사회 - 이사회는 내부통제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고 변경하는 내부통제정책에 대한 최고 의결기관으로 기능
3) 위험관리위원회 - 회사의 업무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위험을 적시에 인식, 측정, 감시, 통제할 수 있는 체계적인 리스크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위험 측정결과를 경영목표 수립에 적절히 반영함
4)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-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을 수립하고,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의 적용 여부 등 집합투자재산평가에 관한 사항을 반기마다 이사회에 보고.
5) 준법감시인 - 이사회 및 대표이사의 지휘를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며, 대표이사와 감사(위원회)에 아무런 제한없이 보고할 수 있음 - 준법감시인은 회사의 내부통제체제 및 이 기준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 문제점 또는 미비사항이 발견된 경우 이의 개선 또는 개정을 요구할 수 있음
C. 내부통제업무 프로세스
1) 내부통제업무는 준법감시인 및 컴플라이언스팀이 회사의 내부통제 프로그램을 집행·관리하며 주기적으로 경영진에게 보고하고,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감사 및 이사회에 최종 보고하여 개선안 등을 승인 받는 절차로 이루어짐 2) 이 과정에서 법규에 의해 명문화되었거나 투자자 및 회사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수

준의 위반 건 등은 지체없이 감독기관에 병행 보고하고 후속처리 지시사항 등을 수행하게 됨

D. 내부고발제도 운영

- 1) 준법감시인(또는 감사)은 내부통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내부고발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, 이에 필요한 세부운영지침을 정할 수 있음
- 2) 내부고발제도는 고발자의 비밀이 보장되는 등 임직원이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축·운영 되어야 함

2. 감사의 기능과 역할

A. 감사의 권한

- 1) 원칙적으로 회사 내 모든 정보에 대한 요구권(경영진은 감사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중요한 경영활동에 관한 정보를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공유하여야 함)
- 2)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요구
- 3) 회계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청구
- 4) 기타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

B. 감사의 기능과 역할

- 1) 회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제시 및 내부감사(재무감사, 준법감사, 업무감사, 경영감사, IT감사 등) 계획 수립, 집행, 결과평가, 사후조치 및 개선방안 제시
- 2) 외부감사인 선임에 대한 승인 및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
- 3)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확인
- 4)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
- 5) 기타 감독기관 지시, 이사회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 등

3. 내부감사부서 감사 방침

감사는 기능별로 분류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일상감사, 종합감사, 특별감사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실시함